

의안번호	제 322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1월 27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2. 주요내용

-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안 제3조, 제8조)
 - (구성) 조사단 구성 대상 추가(관계 공무원) 및 위촉 대상 전문가 확대*
 - *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 (지원) 원인조사 지원 및 지원요청 범위 확대(인근 시·도 ⇒ 다른 시·도)
- 지진재해원인조사단(조사단장)의 임무 및 권한 조정(안 제3조, 제4조, 제7조)
 - (임무)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시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지원 역할로 명확하게 제시
 - (권한) 조사단원 임명, 조사단장의 추가 연구실시 등 권한을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으로 조정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법률 명시 및 용어·자구 수정(전체)
 -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16. 1. 25)으로 원인조사단 명칭 변경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2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긴급위험도 평가단 ⇒ 법 제21조 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원인조사단을 원활히 구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분석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과의 기술지원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조사기간)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을 정한다.

② 조사단장은 원활한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지역 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지진재해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지진재해 원인조사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에 응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조사단원에게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위촉 대상 전문가 인력풀 구성 기준(제3조 관련)

전문 분야	기 준	비 고
지진현상규명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1.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이 필요할 때 전문 분야별로 편성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구성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할 것 2. 충청북도 관할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
건축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교통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산업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통신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수리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지반·토목시설	- 대학교수 - 관련 분야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

I. 조사 개요

가. 목적

나. 조사기간

다. 조사지역

라. 조사단

II. 조사내용 및 원인분석

가. 조사내용(피해발생 현황 등)

나. 원인분석

III. 현지조사 시 문제점 및 특이사항

IV. 최종결과보고 방향

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I. 조사 개요

- 가. 목적
- 나. 조사기간
- 다. 조사지역
- 라. 조사단
- 마. 주요 조사내용

II. 충청북도의 지진현황 및 특성

- 가. 충청북도의 지진현황
- 나. 이번 지진의 특성 및 원인

III. 현장조사 결과

- 가. 지진피해 총괄
- 나. 현지조사 내용
 - 1. 시설별 피해 내용
 - 2. 지역별 피해 내용
- 다.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

IV. 지진재해 교훈 및 정책적 시사점

V. 결론

참고 : 지진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 및 활동사항

부록 : 화보

관련법령 발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진·화산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화산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시행

다.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라. 지진방재와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지진·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에서 대규모의 지진·화산재해가 발생하면 지진·화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진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중앙합동조사단)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자연재해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④ 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